#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 판 결

| | |
|---|---|
| 사 건 | 2008가단16817 채무부존재확인등 |
| 원 고 | ○○생명보험 주식회사 |
| | 서울 마포구 공덕동 ○○ |
| | 대표이사 윤○○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 |
| | 담당변호사 양장열 |
| 피 고 | 강○○ |
| | 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08. 7. 25. |

##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교통사로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 제3항 제1호

판사 오덕식 _____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생명보험계약 및 생명보험재계약과 그 계약체결에 의한 보험료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보험계약 내역표 기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만기 및 상해 발생시 각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 2. 확인의 이익

피고는 1998. 5. 30. 원고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만기 및 상해시 각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보험계약(무배당SOS교통상해보험계약, 이하 '본 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6. 10. 8. 동승자 소외 김순자와 함께 택시운전자인 소외 송학찬이 운전하는 서울33자[redacte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소외 방정훈이 운전하

는 서울31허[redacted]7호 승용차에 추돌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틀 후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59-35에 있는 원일정형외과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등의 병명으로 2006. 10. 10.부터 2006. 10. 25.까지 1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두 달 가량이 지난 후인 2006. 12. 8. 다시 같은 병원에 같은 병명으로 입원하여 2007. 1. 8.까지 한달 동안 치료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던 중 약 8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인 2007. 8. 27.부터 2007. 9. 28.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강남고려병원에서 입원치료하면서 제5-6 및 제6-7경추간 전방경유 추간판 절제술 및 전방 추체간 유합술 등의 수술을 받고 2007. 11. 13. 지안재활의학과 의원에서 생명보험 장애등급 구분표상 4급 15항 운동장해 4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 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본 건 해당장해는 사고발생경위, 검사결과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감안할 때 교통장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현재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금지급여부에 관한 권리 내지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양당사자 사이의 불안제거는 본 소

송을 통하여 유효적절하게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보험계약 체결 및 사고발생 경위 등**

피고는 1998. 5. 30. 원고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만기 및 상해시 각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으로 하는 본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여자, 사고 당시 53세)는 2006. 10. 8. 동승자 소외 김순자와 함께 택시운전자인 소외 송학찬이 운전하는 서울33자[redacted] 택시를 타고 구로역 방면에서 구로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타고 운행하여 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위 차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소외 방정훈 운전의 서울31허[redacted]호 승용차가 우측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차로변경함으로써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관련규정**

가. 본 건 보험계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5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치료생활비 지급

나. 본 건 보험계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6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 자동차 사고 처리비 지급

다. 본 건 보험약관 별표3 재해분류표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여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

**5. 보험금지급 채무의 부존재**

**가. 신청인의 장해상태**

먼저 2007. 11. 13. 지안재활의학과 의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장해상태는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가 완전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약관 제4급 제15항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위 지안재활의학과 의원 발행의 후유장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전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본 건 약관 제11조 제1항 제5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만 지급되는 것인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본 건 보험사고는 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의 개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고 아울러 피고의 장해상태는 위 교통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지도 아니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약관에 규정된 "재해" 해당여부**

본 건 보험약관 별표3 재해분류표에 규정된 재해의 개념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경우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미 질병 내지 체질적 요인을 가진자로서 경미한 외부적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본 건 교통사고는 위에서 말하는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해당할 지언정 위 약관상 재해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본 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정도와 관련된 서울동작경찰서 발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본 건 사고는 2008. 10. 8.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으로 동승한 소외 김순자와 뒷좌석에 있던 상태에서 상대방차량에 의하여 추돌된 사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사고를 처리한 동부화재의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택시운전자 소외 송학찬은 아무런 부상이 없어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아울러 보상도 받은 내역이 없으며, 동승한 김순자의 경우 세강정형외과에서 경추염좌 등으로 단 4일을 입원한 후 합의금으로 금 261,030원

을 지급받고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방정훈도 아무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한편 해당 사고는 차량에 전혀 파손이 없는 사건으로서 특히 피고가 탑승하고 있던 위 송학찬 운전의 SM520차량은 아무런 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면책처리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본 건 사고는 극히 경미한 사고에 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유독 피고만이 장기입원을 지속하다가 결국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까지 하게된 상황입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일단 피고의 장해상태는 해당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한 진단이 아닌 퇴행성 질병에 해당함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라 사료되오며 아울러 본 건 교통사고는 위 약관상 재해의 개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다. 교통사고와 장해상태의 인과관계**

먼저 피고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지안재활의학과 의원의 진단서에도 피고의 장해상태가 본 건 교통사고에 의하여 발현한 것인지 아니면 체질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자체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신경외과 나[redacted] 작성의 회신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무기록 및 필름판독 소견에 따르면 추간판의 퇴행성변성 소견에

의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라고 하고,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척추체 및 추간판의 퇴행성변성 소견에 의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하며, 사고기여도에 대해서는 피고의 경우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이 뚜렷하고 사진상 보이는 추간판팽윤 및 추간공의 협착소견은 전형적인 퇴행성변성소견으로 외상 정도를 감안할 때 외상의 기여도를 30%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위 기여도에 대한 소견은 외상 후 추간판탈출증에 상응하는 증상이 나타난 경우의 사고가 기여했을 때를 감안한 것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경우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라고는 볼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인 이봉암 작성 회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후 약 10개월 후 촬영한 경추부 MRI 소견 측면상에서 척추체는 사고로 인한 골절이나 탈골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지만 디스크 내용물은 모두 퇴행성 소견이며, 사고는 2006. 10. 발생하였고 MRI촬영은 사고후 약 10개월 후인 2007. 8.에 하였는데 만약 위 오랜 기간동안 척추체 증상이 수술을 받을 만큼 심했다면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2007. 8.에 촬영한 MRI소견에서 가벼운 디스크의 팽윤 내지 때에 따라서는 정상인의 디스크 모양인데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이런 MRI소견으로는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수

술적 치료를 시행받았는바,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일반적으로 디스크 팽윤은 연령 증가와 더불어 공존하는 퇴행성질환입니다. 이것은 재해로 생기는 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라. 소결론**

먼저 피고는 자신의 장해상태와 관련하여 지안재활의학과 의원의 진단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병원은 피고가 수술을 받은 병원도 아니며 수술과 전혀 무관한 병원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장해진단은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받는 것인데도 위와 같이 전혀 무관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정도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신경외과 작성의 소견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오히려 본 건 교통사고는 극히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건 약관상 재해의 개념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또한 위 교통사고와 피고의 장해상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 상,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지급채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사오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 보 험 계 약

보험계약의 종류 : 무배당SOS교통상해보험

증권번호 : 508064[redacted]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피고

보험기간 : 1998. 5. 30.부터 2013. 5. 30.까지

보험가입금액 : 100,000,000원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함.

**[별지 2]**

피고는 2006. 10. 8. 21:20경 소외 송학찬 운전의 서울33자[redacted] 택시에 탑승하고 구로역에서 구로소방서 방면으로 가던중 소외 방정훈 운전의 서울31허[redacted]호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된 사고.